

동물용의약품의 제조·품질관리기준 교육·훈련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30일		
신청인	기관 (법인[], 비법인[])	명칭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대표자	성명				
	연락처	주소				
		전화번호	팩스			
	담당자	성명		연락처		
신청내용	교육 훈련기관 명칭					
	교육 훈련기관 소재지			전화번호		
	교육 훈련 강사 인원					
	교육 훈련 과정 명칭					

「약사법」 제38조의5제2항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14조의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의 제조·품질관리기준 교육·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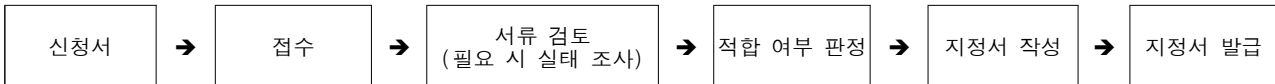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14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 등에 관한 자료 3.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4. 교육시행규정 5. 교육실시계획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